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실천사항 운영 지침

1. 목적

본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「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을 위한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구성,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하고, 대금지급 등의 하도급거래 적법성을 사후 검증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심의 대상

- (1)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심의 : 기존 협력업체 가격 변동사항 및 30억 이상 계약체결사항
- (2) 신규업체 등록, 계약체결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
- (3)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심의
- (4)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 심의 및 조정
- (5)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: 대금지급,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한 전가 등
- (6) 기타: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, 상생협력활동 및 동반성장 지원방안 등

3.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(1) 위원회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.
- (2) 하도급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, 각 구매그룹, 동반성장 전담자 등 관련자 3인 이상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유관 부서장이 참여할 수 있다.
- (3) 위원은 매년 1회 조직 변경 등 반영하여 운영하고 년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하도급 담당 임원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.
- (4)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진행할 수도 있다.
- (5) 위원회는 필요시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한다.
- (6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(예시,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그룹에 건의한다.
- (7)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"안건 없음"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 수 있다.

4. 심의 내용

(1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)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

2.(1)항의 심의대상 하도급 협력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기본 계약서 작성,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가격결정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또한 사전 심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다.

<사전 심의 사항>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-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- ⑤ 부당한 특약 조건 설정 금지 위반여부

2)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

- ① 하도급거래 협력사(신규등록 협력사 포함)에 대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.
- ②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시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운영지침 준수여부를 검증한다.
- ③ 하도급거래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등을 심의한다.

3)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

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안이나 협력사로부터 혹은 내부 보고로 접수된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 및 조정하고 확인된 문제는 자진 시정 및 이행 조치를 취하고, 필요시 법무그룹의 지원과 조언을 받는다.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그룹에 요청한다.

4)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

- ① 검증대상 및 검증시기
 - ㉠ 등록 취소 등 계약해지 · 해제 협력사: 계약종료 시
 - ㉡ 거래중인 협력사: 월1회 (월 마감 후)

② 검증사항

다음의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해 그 적법성을 사후 검증(모니터링)하고 시정한다.

- ㉠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완료 여부
- ㉡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
- ㉢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발생 여부
- ㉣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
- ㉤ 발급 서면 보존 및 관리사항 등

5) 기타 하기의 사항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.

부당반품 및 위탁취소 여부,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,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여부,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여부 등

6) 기타 동반성장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

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방향 설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한다.

5. 사후 관리

- (1)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오프라인 회의록(온라인 회의록 포함)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.
- (2) 위원회 관련 증빙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.